

G-Welfare Weekly Report

경기복지재단 | 발행인 (박준배)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3층 | Tel. 031-267-9368 | www.ggwf.or.kr | 2016.10.06.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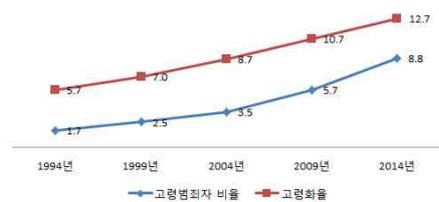
중앙정부 정책동향

1. 노인의 날, 노인은 행복한가?

01 주요 내용

- 10월 2일 스무 번째 ‘노인의 날’ 은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 노인의 문제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199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
-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015년 현재 657만 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21만 명이 증가하였으나, 노인의 건강, 생활보장 등 삶의 수준은 낮아지는 추세
 -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이 3천명을 돌파하는 하는 등 노인의 기대수명은 82.4세로 높으나, 노인의 89.2%가 당뇨,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 유병기간을 제외한 건강 수명은 65.4세에 불과하여 17년 동안 돌봄서비스를 받으며 살아야 하고,
 - 노인빈곤율은 48.8%로 OECD평균(12.6%)보다 약 4배가 더 높은 상황
- 노후의 경제적 문제와 건강악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심리적 불안 등이 커지면서 노인범죄도 2014년 8.8%로 1994년 대비 418%증가*
 - 노인범죄유형은 교통(32.9%), 폭력(18.1%), 지능** (16.6%), 기타(15.5%), 절도(5.5%) 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흉악 강력범죄를 저지른 61세 이상 노인 범죄자는 2005년 402명에서 2014년 1993명으로 10년 사이 약 5배 급증
 - 노인범죄자의 범행 동기는 운전부주의(13.9%)를 제외한 나머지를 100으로 했을 때 우발적 원한 70.2%, 생활비 마련 14.1%로 심리적 불안정이나 경제적인 것이 주요 원인
-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사회의 어른” 에서 고집 세고 사회적 갈등을 만드는 노인으로 이미지가 변화하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증가
 - 범죄 피해자는 2014년 89,350명이며, 유형은 교통(30.9%), 지능(22.1%), 폭력(19.3%), 절도(16.8%), 기타(7.6%) 순

고령범죄자 비율 및 고령화율 추이(1994-2014년)



<노인범죄자 범행동기>



* 경찰청 범죄통계(2014)
 ** 지능범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6.9.)

02 시사점

-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수준은 38개국 중 28위로 하위수준으로(OECD, 2016년 한국 경제보고서) 노인이 행복한 사회, 100세 시대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의 재구조화가 시급
 - 노인 생애주기와 사회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등 노인 커리어 유지 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그에 맞게 노인정책 조정하므로써 질병, 빈곤, 고독 등 문제 해결

2. 경기도 노인돌봄 서비스 비용, 월소득의 19.37% 부담

01 주요 내용

- 노인에게 빈발하는 질환 중 하나인 치매는 그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61만2천명(유병률 9.6%)에 달하며, 경기도의 경우 치매환자* 수가 72,979명으로 전체 노인의 5.5% 차지
 - 치매로 인한 고통은 노인 자신뿐만 아니라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사회생활이나 결혼을 못하는 “간병실업, 간병독신”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
- 치매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정부는 2014년 7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치매 특별등급을 신설하였으나 서비스 혜택을 받는 노인은 여전히 많지 않은 상황
 - 경기도의 경우 치매환자 중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4,612명으로 서비스수혜율은 6.3%에 불과
- 경기복지재단(2016) 조사**에 따르면 치매와 같은 질병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16.6%(218,935명)이지만,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은 99,019명으로 돌봄서비스 수혜율은 45.2%에 불과
- 돌봄서비스는 스스로 일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없는 노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제반 서비스를 의미하며, 돌봄서비스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5.6%에 달하지만,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노인은 22.6%에 불과
 - 시군별로 부천시(55.5%)가 가장 높고 연천군(3.1%)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높게 나타난 만큼 몰라서 서비스 이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상황이나 지역의 이용시설 부족이 주된 원인

*알츠하이머, 혈관성치매, 기타 질환으로 인한 치매를 합침

** 경기복지재단 (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경기도 31개 시군 돌봄서비스 이용률〉



- 돌봄이 필요하지만 주로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 고 응답한 비율이 50.2%에 달하고 가족이 돌보는 경우 하루 평균 7.50시간을 돌봄지만 실제 돌봄이 필요한 시간은 9.16시간으로 1.66시간(99분)의 차이 발생
- 돌봄서비스 이용에 지불하는 비용은 38.66만원으로 50만원을 넘는 경우도 29%에 달하며, 돌봄비용이 월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37%로, 복지국가의 돌봄비용 비중이 4~7%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

02 시사점

-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기능 약화 및 상실로 인해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므로 경제적 여건 및 서비스제공시설 등 물리적 상황의 제약을 최소화하는 노력 필요
 -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구가 소득과 무관하게 거주지역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인프라 설치 및 돌봄 비용지원이 필요
 - 경기도 노인 빈곤율***이 47.1%에 달하는 만큼 돌봄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것이 중요

*** 66세 노인가구 가구 기준

02

사도/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1. 경기도 노인의 장기요양 등급인정 현황

지난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돌봄을 위한 대표적 사회보장제도임. 이에 본 제도의 등급인정 현황과 등급인정의 지역별 차이를 비교

-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 등*을 요양시설에 모시거나 집으로 찾아가 돌보는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등급판정 신청 시 방문조사를 통해 등급을 판정하고(등급인정(1~5등급) 또는 등급외(A~C등급)), 판정등급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 장기요양제도는 시행초기에 비해 등급판정 인정율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등급인정자 규모는 '11년 32만 4천명에서 '15년 47만 8천명으로 확대되었고, 인정율도 동기간 67.8%에서 74.2%로 증가
- 장기요양 등급인정 현황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83.5%)·경기(80.4%) 등 수도권지역의 인정율이 높고 전북(61%)·전남(63.9%) 등 농어촌지역의 인정율은 낮은 편임
 - 그러나 인정율이 높은 경기도의 경우에도 등급판정 신청자 중 등급내자로 인정받은 경우는 약 64.4%에 불과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욕구 대비 실질적 서비스 수혜율은 낮은 실정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

**인정율은 판정자 수(등급내+등급외) 대비 등급내의 비율

〈표 1〉 전국 시도별 장기요양 등급인정 현황(2015년, 전연령)

	전국	경기	서울	인천	충북	충남	대전	세종	강원
인정율	74.2	80.4	83.5	78.1	76.2	74.0	74.9	77.1	76.6
	광주	전북	전남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부산	제주
인정율	64.9	61.0	63.9	74.1	76.5	71.2	65.6	68.6	78.1

(단위: %)

- 한편 도내 시군별 장기요양 등급판정자 규모는 고양(8,286명)·수원(7,885명)·성남(7,680명) 순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과천(628명)임
 - 시군별로 등급외 판정 비율은 의왕(15.7%)·용인(15.8%)·과천(17%)·구리(17.4%)는 등급외자가 적고, 동두천(44.8%)·포천(43.7%)은 등급외자가 많아 등급외 판정비율이 매우 상이
 - 한편 도내 시군별 요양등급 1등급 인정 비율은 과천이 15.4%로 가장 높고 양주(5.5%)·동두천(5.6%)이 가장 낮아, 시군별로 등급내자의 구성 또한 상이하게 나타남

〈표 2〉 경기도 시군별 장기요양 등급판정 현황(2015년)

	등급내 / 등급별 구성비							등급외	등급내 / 등급별 구성비							등급외
	소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외		소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외	
고양	8,286	8.3	14.6	37.5	33.2	6.4	1853	시흥	2,383	7.4	13.1	37.1	36.6	5.8	910	
의정부	4,396	6.3	14.3	41.3	33.3	4.8	1117	광명	2,476	8.2	14.5	37.1	35.7	4.4	668	
파주	3,534	6.7	12.6	35.9	36.6	8.3	1121	군포	1,981	9.5	16.8	39.9	29.5	4.2	603	
김포	2,631	6.6	13.8	40.4	35.2	4.0	518	수원	7,885	10.4	18.1	40.2	28.6	2.7	1531	
양주	1,965	5.5	12.5	39.4	34.5	8.0	676	화성	3,643	8.6	15.8	38.0	34.1	3.4	820	
포천	2,020	7.0	12.6	40.0	34.4	6.0	882	평택	3,931	6.2	15.5	43.1	31.7	3.5	788	
동두천	1,295	5.6	10.0	39.3	35.5	9.6	580	오산	1,124	9.9	18.1	38.2	30.3	3.6	299	
연천	727	6.9	10.6	43.2	30.9	8.4	241	의왕	1,201	9.3	15.1	41.8	29.6	4.2	188	
남양주	5,323	7.9	14.8	38.0	31.9	7.4	1016	과천	628	14.2	16.9	39.3	26.0	3.7	107	
구리	1,445	8.2	17.5	38.5	32.2	3.6	252	성남	7,680	11.8	16.3	37.8	30.5	3.6	1505	
하남	1,272	9.7	16.2	42.0	27.0	5.1	349	용인	7,305	10.3	16.0	39.8	30.7	3.3	1153	
양평	1,744	7.3	15.6	39.4	34.2	3.4	413	광주	2,290	8.8	18.1	43.5	26.6	3.0	469	
가평	1,192	11.4	12.8	37.2	33.8	4.7	349	이천	2,008	8.4	14.3	43.3	31.1	2.8	700	
부천	6,770	6.4	13.4	39.9	37.2	3.1	2043	안성	1,899	9.4	18.7	45.9	21.7	4.4	428	
안산	4,145	7.6	13.4	39.2	33.1	6.6	1182	여주	1,514	10.1	17.0	37.3	31.2	4.3	429	
안양	4,326	8.6	16.9	37.7	32.4	4.4	1012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있어 지역 간 격차가 발생되고 있어, 향후 지역 간 편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편차를 줄이려는 노력 필요
 - 지역별 서비스대상자 규모, 노인인구 비율, 방문조사자별 판단 상이 등 다양한 요인 고려

03 FACT CHECK

사회복지시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범위는?

- 지난달 28일부터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고 있으나, 법 적용대상*과 법 규정에 대한 해석이 광범위하여 공공 및 유관기관의 혼란이 가중**
 - 일선 사회복지현장에서도 해당기관이 법 적용대상인지, 직무관련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어느 경우 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
 - 현재로서는 유권해석 없이 향후 판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대응책 마련에 골머리
- 청탁금지법의 주요 적용대상은 모든 공공기관(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과 학교 및 학교법인, 언론사 등임
 - 그러나 법 제1조에 따르면 민간인이지만 공적인 업무를 맡고 있어 공직자로 간주하는 사람, 즉 “공무수행사인”이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민간영역 또한 경우에 따라 포함
- 사회복지시설 중 공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법령에 따른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정기간행물 발행 기관이 청탁금지법 적용범위에 해당

구분	적용대상
공무수행사인	· 공공으로부터 시설운영업무를 수탁 받은 기관과 시설 내 운영위원회의 민간인 위원 · 민간에서 공공으로부터 단위사업만을 위탁받은 경우 해당사업의 담당자 · 민간인이지만 공공기관·학교·언론사 내 위원회에 위원으로 있는 사람
공직유관단체	· 복지재단(출연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등
학교·학교법인	· 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학교법인
언론사	· 간행물을 발간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업무 담당자***

- 복지시설의 경우 위탁법인에 따라 적용여부가 상이하기 때문에 형평성 있는 범위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직무관련성 판단을 위해 복지현장 업무특성이 반영된 매뉴얼도 필요

*약 400만 명 추산

**“김영란법, ‘공직자 간주 민간인 개념 두고 혼선’ (매일경제, 9.28.), “이것도 저촉되나... 김영란법 시행 첫날 곳곳서 혼란” (세계일보, 9.28.), 등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에 따라 잡지나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경우만 해당

04 통계로 보는 복지

우리나라 노인범죄 통계



- 우리나라 61세 이상 고령자의 범죄율은 '94년 1.7%에서 '14년 8.8%로 급속히 증가
 - 범죄유형별 발생현황은 교통범죄를 제외할 경우 폭력범죄 > 지능범죄 > 절도 > 풍속범죄 > 성범죄 순임
- 고령자범죄와 관련해 특히 강력범죄와 절도의 증가율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성범죄와 경제범죄의 증가로 인한 것임
 - '14년 일어난 1,208건의 고령자 강력범죄 중 94.2%(1,138건)이 성범죄에 해당하며, 같은 해 고령자 절도범죄는 5,445건이 발생
- 범죄당시 정신상태는 정상 44,431건, 주취 8,644건 순이며 정신이상은 소수만 해당